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9.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9명”을 “28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7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
당관 1명을 둔다.

-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6. 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01”을 “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00”을 “3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5”를 “374”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별표 3의2]

인사혁신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9조의2제4항 관련)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22의3. (생략)	1. ~ 22의3. (현행과 같음)
23. <u>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u>	23. <u>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u>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29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③ ----- ----- ---. ----- ----- ----- <u>28명</u> ----- ----- -----

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장 한시정원

<신설>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6. 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1</u>	<u>400</u>	-1
•	•	•	
•	•	•	
일반직 계	<u>400</u>	<u>39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5</u>	<u>374</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